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49호

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 지원
협약의 관리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탁
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3월 20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【 전환교통지원사업 위탁기관 선정 】

1. 위탁받은 기관

- 명 칭 : (사)한국철도물류협회
- 대표자 : 박재우 회장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나길 7 805호(한강로3가,
철도회관)

2. 위탁업무의 내용

-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등 「지속가능 교통
물류 발전법」 제21조 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의 관리

3. 위탁기간

- 2024년 3월 20일부터 2027년도 협약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하며,
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 가능